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청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95 발의연월일: 2025. 3. 31.

발 의 자:정청래·김용민·박범계

장경태 · 김기표 · 서영교

박지원 • 박은정 • 박균택

박희승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하며, 국회에 출석하 여 헌법재판소의 사무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발언하는 직위임.

그러나 헌법재판소 규칙 제·개정, 예산 요구, 예비금 지출, 결산 등 헌법재판소의 중요 사무를 결정하는 재판관 회의는 헌법재판관만이 참여할 수 있어 헌법재판관이 아닌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운영과 관련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어렵고, 국회에서 수렴된 의 견을 재판관회의에 전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.

이에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으로 보하고, 헌법 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, 실장, 국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16조제4항제3호, 제17조제6항 신설, 제18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4항제3호 중 "사무처장, 사무차장,"을 "사무차장,"으로 한다.

제17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,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헌법재 판소장의 명으로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차장, 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18조제1항 중 "정무직으로 하고,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."를 "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보한다.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무처장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장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처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6조(재판관회의) ① ~ ③ (생	제16조(재판관회의) ① ~ ③ (현		
략)	행과 같음)		
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판	4		
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		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
3. <u>사무처장, 사무차장,</u> 헌법재	3. <u>사무차장,</u>		
판연구원장, 헌법연구관 및 3			
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(任免)			
에 관한 사항			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	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		
제17조(사무처) ① ~ ⑤ (생	제17조(사무처) ① ~ ⑤ (현행과		
략)	같음)		
<u><신 설></u>	⑥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규칙		
	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		
	헌법재판소장의 명으로 그 소		
	관 사무의 일부를 차장, 실장		
	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		
<u>⑥</u> ~ <u>⑨</u> (생 략)	⑦ ~ ⑩ (현행 제6항부터 제9		
	항까지와 같음)		
제18조(사무처 공무원) ① 사무처	제18조(사무처 공무원) ① 사무처		
장은 정무직으로 하고, 보수는	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		
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	재판소장이 보한다.		
<u>으로 한다.</u>			

② ~ ⑤ (생 략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